

| | |
|-------|--------------------------|
| 의안번호 | 제 334 호 |
| 의결년월일 | 1996. 2. 10. (제 41 회) |

| | |
|------|----------|
| 의결사항 | 인안 가결 |
|------|----------|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 (안)

| | |
|-------|----------------|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
| 제출년월일 | 1996. / . 3/ . |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34 |
|----------|-----|

제출년월일 : 1996. 1. 21.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사유

- '95. 12. 19. 국무회의에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개정 국내여비 규정에 맞는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군별로 상이할 수가 있는 것을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으로 준용하도록 함.
- ※ 국내여비규정 개정사항은 공무원이 출장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한것임.

3.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공문(경남도 회계 12500-2913호 '95. 12. 29)

고성군여비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여비조례"를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제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명 고성군여비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임용 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탁료, 식비, 이전비 및 자족이전비로 한다.</p> <p>제3조(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과 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p> | <p>제명 고성군공무원여비조례</p>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 -----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 ② ----- ----- 15로 ----- ----- -----</p> |

| 현행 | 개정안 |
|---|--|
| <p>①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의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 정액의 전부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p>제6조(현장지도여비) ① 지방제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 한도내에서 현장지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 <p>③(현행과 같음)</p> <p>(삭제)</p> <p>※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 준용</p> <p>(삭제)</p> <p>※ 현지교통비(1일 6,500원) 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4시간이상 10,000원, 4시간미만 5,000원) 지급</p> <p>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

| 현행 | 개정안 |
|-------------|---|
| <p>(신설)</p> | <p>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p> <p>3.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p> <p>4. [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p> <p>제4조(국외여비규정의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p> <p>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3. 제21조및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 <p>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p> |